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 (2)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하여 장기별로 별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박오순(변호사)

- 지난해에 이어

(4) 뇌사판정 의료기관

1) 뇌사판정 기관의 설치

뇌사는 죽음을 판단하던 종래의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아직도 사회적인 합의를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수 있다. 이 법은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뇌사판정의료기관에 한하여 뇌사판정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뇌사판정의료기관은 통보전에 미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였다.

2)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의사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의료인, 변호사 자격 소지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의료인 3인 중 신경과 전문의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하여 뇌사판정위원회

의 위원이 뇌사조사서를 작성하거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인 경우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기 곤란한 위원이 있는 경우 당해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를 일정기간동안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였다.

3) 뇌사의 판정절차

장기 등의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뇌사자의 가족은 뇌사판정에 대한 검사기록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같은 절차에 의해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뇌사판정위원회는 회의록 및 판정서를 작성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하여야 한다.

4) 사망시기

이 법에는 뇌사판정에 따른 사망시기에 대하여 달

리 명시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사망시기에 관하여서는 뇌사판정요건 충족시설, 관찰시간 경과시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 법은 뇌사판정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한 절차를 두어 생명이 경시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임상의료인들은 뇌사판정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이 사망의 공식적인 인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다

(5) 장기이식 의료기관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하여 장기별로 별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 이식대상 장기, 적출, 이식금지 장기, 매매 금지

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 중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 인체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장기 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체 감염된 장기 등,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를 비롯하여 질환이 있는 자의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 보존의 부적정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 등으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 등에 대

한 적출 또는 이식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 16에 미만인 자, 임부, 해산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장기의 적출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법 제 6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이유로 장기매매를 금지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시키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적출요건

①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적출요건

* 동의방식 및 요건

살아있는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고,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물론 제공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동의하는 형식은 본인의 경우,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의료인의 설명 의무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이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이식에서 설명의무 이행과 동의 수령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는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조언의무, 설득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등이 있다

장기적출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적출 가능한 장기의 종류와 상태, 장기적출의 범위, 방법, 시기 등 진단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공자는 자기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이 자기결정의 첫째 조건이다. 진단설명은 진단에 대한 대체적인 고지로 충분하다.

만약 장기적출 후의 예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그 불확실성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장기제공자나 장기이식자에 대하여 장기적출에 따른 마취 방법, 수술부위, 방법, 시간, 회복시간 등 적출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여 그들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명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자기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인은 장기적출에 따라 예상되는 후유증, 부작용, 부작용의 발생확률, 치료가능성, 방법, 치료에 소요되는 시기, 비용 등에 대하여 제공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의사가 적절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잘못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지시나 치료방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도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환자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공자의 승낙요건**

승낙권자는 장기제공자 자신이며 직접 승낙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을 통한 승낙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당해 미성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부모라고 하여도 대신 승낙할 수 없다.

② 죽은 자로부터의 적출요건

*** 뇌사의 정의 및 판정기준**

이법은 “뇌사자 라 함은 이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뇌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뇌사판정 기준은 6세 이상과 6세 미만으로 구별하고 있고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은 선행조건과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선행조건은 ㉠ 원인 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할 것 ㉡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 치료가능한 약물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 저체온상태(직장온도가 32도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판정기준으로는 ㉥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 두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을 것 ㉨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 자발운동, 제뇌가직, 제피질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무호흡 검사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 ㉡~㉤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 재확인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 기준은 위와 같은 조건 이외에 재확인 시간을 늘리고 있다. 생후 2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에 대하여는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하여는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이 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죽음의 시점을 심폐정지시와 뇌사시로 이원화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가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고 뇌사판정 절차가 운용상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

*** 뇌사자의 장기적출 승낙**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뇌사자 본인의 생전 의사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하면 적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장기는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다.

3) 기타 기록작성, 보관의무 등

장기적출 및 이식에 관한 기록은 의무기록 중의 하나이므로 의료법상 기록작성 보관의무가 있으나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에서 중앙통제를 하는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다.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기록을 작성하여 당해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한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록을 제출받은 이식 의료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한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장기 등을 기증한 자 또는 이식받은자와 그들의 가족, 유족이 당해 장기 등의 적출,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당해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업무 담당자와 기록을 보관, 관리하는 자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4) 수익자부담의 원칙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비용의 산출은 의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결론

이 법의 제정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이 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죽음의 시점을 심폐정지시와 뇌사시로 이원화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가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고 뇌사판정 절차가 운용상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뇌사자 장기적출 승낙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운용과정에서 요건검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을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순수기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임상실체에 있어서는 지정기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우려된다 할 것이다.

이 법은 인간배세포(Stem cell)복제를 통한 자기장기의 배양이 가능하거나 돼지 등 동물장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없어질지도 모르나 당분간은 타인의 장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장기이식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박우순/ 1993년 변호사 개업 후 조세법, 보험법, 행정쟁송과 공정거래, 지적재산권법, 환경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변호업무를 담당해 왔다. 중소기업 고문변호사와 생명회의 민권연대 대표를 맡고 있으며, 합동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창조'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